

지도자선임규정

제정 2011. 9.19.

개정 2014.1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골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선수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지도자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된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2. “보조지도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된 트레이너를 말한다.
3. “선수단”이라 함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 규정에 의거 선발된 골프선수를 말한다.
4. “단장”이라 함은 훈련, 해외파견 등의 목적으로 선수단이 구성될 때 임명되는 대표를 말한다.
5. “코치”라 함은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 선수의 전반적인 통솔 및 훈련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트레이너”라 함은 코치를 보좌하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술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도자자격) ①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는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년 이상의 골프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1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골프 지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골프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갈음하여 국가대표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상비군 코치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회장이 추천한 자로 골프 선수 및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회장이 3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해당 코치로 선임.교체한 경

우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전항의 지도자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④ 협회가 인정하는 국가대표 훈련 지도자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협회가 정식으로 파견하는 대회에 한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가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5조(선임방법) ①지도자는 제3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지도자(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

1. 국가대표 코치 4명
2. 국가상비군 코치 약간명
3. 트레이너 약간명

제7조(임기) ① 지도자의 임기는 당 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보선 지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무) ① 지도자는 당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규정에 의거 선발된 대표단의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표단의 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 소집 관리
2.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3.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4. 국가대표단 훈련대상 선수선발 참여
5. 선수의 경기력 부진,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
6.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7. 각종 국내.외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보고
8.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 감독
9. 기타 대표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의 건의
10.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9조(보고서) 지도자는 합숙훈련 시에는 매일, 국가대표 인솔대회 또는 국내 경기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훈련일자 및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상벌) 지도자에 대한 상벌은 협회 상벌위원회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9.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12.3.)로부터 시행한다.

지도자서약서

본인은 대한골프협회 _____년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코치로 선발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임기 중 선수들을 지도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협회의 훈련일정에 따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선수들을 지도하겠습니다.
2. 선수들의 지도 시 솔선수범하여 훈련에 앞장서며 언행을 단정히 하여 선수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3. 협회의 훈련기간 중에는 개인적인 지도, 교습을 일체 삼가며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 지도에 전념하겠습니다.
4. 코치 본인 및 선수들에게 비공식적인 제반 훈련 용품을 제공 받을 시에는 협회에 사전 보고하여 승낙을 받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대한골프협회장 귀하